



수입 검사 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지방청 수입관리과 또는 본청 수입식품과를 찾아주세요.

K o r e a F o o d & D r u g A d m i n i s t r a t i o n

식품안전국 수입식품과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Tel. 02)380-1733~4, Fax 02)388-6392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



# 수입식품 신고 안내서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Contents >>

- 수입식품 신고대상 ----- 1
- 수입신고 방법 ----- 2
- 수입식품 검사 절차 ----- 3
- 신고시 주의사항 ----- 4
- 국외검사기관 성적서/유기농 관련 서류 ----- 5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관련 서류 ----- 6
- 소해면상뇌증(BSE)관련 서류 ----- 7
- 주문자부착상품(OEM) 관련 서류 ----- 8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신고 ----- 9
- 기구 또는 용기·포장 검사 ----- 10
- 건강기능식품 신고 ----- 11
- 건강기능식품 검사 ----- 12
- 사전확인등록제/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 13
- 식품등수입판매업 거래내역 등록방법 ----- 14
- 식약청 수입식품처리 관할구역 ----- 15
- 식약청 수입식품검사부서 연락처 ----- 16





## 수입식품 신고대상>>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신고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b>농임산물</b> 	<b>가공식품</b> 	<b>식품첨가물</b> 	<b>기구용기포장</b> 	<b>건강기능식품</b> 

■ 수입신고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사항	관련부서	관련사이트
원재료의 식용가능여부	식품기준과 (02-380-1690)	<a href="http://fse.foodnara.go.kr/origin">http://fse.foodnara.go.kr/origin</a>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농임산물, 가공식품)		<a href="http://www.foodnara.go.kr/portal/site/kfdportal/infotelegram">http://www.foodnara.go.kr/portal/site/kfdportal/infotelegram</a>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신고재질의 명칭 (기구용기포장)	첨가물기준과 (02-380-1687)	<a href="http://fa.kida.go.kr">http://fa.kida.go.kr</a>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	<a href="http://hfoodi.kida.go.kr">http://hfoodi.kida.go.kr</a>
한글표시사항 올바른 표시여부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	
한글표시사항 올바른 표시여부 (건강기능식품)	영양정책과 (02-380-1311)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재질)증명서 사진 확인

## 수입신고 방법>>

- 1 관세청 UNI-PASS 접속 (<http://portal.customs.go.kr>)
- 2 사용자등록  
대표자 및 업체정보 등록 → 수출입신고자 부호발급요청 → 공인인증서 정보등록 → 승인요청  
※ 승인요청 한 모든 신청자는 이용신청서 출력/지참하여 세관 방문
- 3 통관단일창구에서 '식품등의수입신고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서' 작성



■ 품목별 '수입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입식품정보사이트 접속 ([www.foodnara.go.kr/importfood](http://www.foodnara.go.kr/importfood))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수입신고방법  
품목별 동영상 설명

- 농·임산물
- 가공식품
- 식품첨가물
- 건강기능식품
- 기구·용기·포장





## 수입식품 검사 절차>>



### 서류검사(수입신고내용 검토, 2일)

1. 신고한 내용의 수입관련개요, 제품개요, 제조공정, 원재료명/성분 등 검토
2. 1항 내용과 전산에 신고 된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3.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p5~8참조)

### 관능검사(3일)

- 신고한 한글표시사항과 현품의 수출국 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수출국 표시사항 미표시: 반려
  -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보완
- 수출국 표시와 상이한 보관 방법시 부적합

### 무작위(5일)/정밀검사(10일)

- 〈가온보존시험 대상 식품 14일〉
- 기준규격 및 위해정보사항 등 검사
    - ※ 식품위생법에 정한 수거량 수거
  - 검사기관
    - 무작위검사: 식약청 분석센터
    - 정밀검사: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검사기관

### 검사결과



## 신고시 주의사항>>

### 동일모션으로 동일수입자가 수입한 동일식품은 반드시 수입신고서 1건 신고

- 수송편명, 입항일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서 별도 작성
- 동일모션으로 수입된 동일식품이나, 여러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 또는 포장단위가 혼재된 경우,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시 3쪽에 모든 제조일자별 수량, 중량, 과세 가격을 구분 기재(통·병조림 식품 제외)
- 동일모션으로 수입된 동일식품이나, 화물관리번호가 여러건인 경우, 식품등의 수입 신고서 작성 시 1쪽에 대표 화물관리번호 기재하고 3쪽에 각각 신고

### 제조회사는 식품을 실제 제조·공하고 생산일/유통기한을 생성한 업소 기재

- 지사(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본사 주소가 아닌, 제품을 제조한 공장 소재지 기재
- 제조회사의 코드가 없는 경우 업소명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제조업소' 코드 생성 요청

###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인 경우 원재료명칭(성분코드), 배합비율 기재 및 기구·용기·포장인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명칭(코드) 기재

- 제품명칭 또는 상품명칭은 기재해선 안됨
- 복합성분인 경우 텍스트로 복합성분 입력가능(성분코드 생성요청 금지)
  - ※ 입력방법: 수입식품정보사이트의 가공식품 수입신고 동영상 참조
- 신고하고자 하는 성분/원료/재질에 코드가 없는 경우, 「식약청 전자민원창구 [http://minwon.kfda.go.kr] 성분신청」으로 신청





## 국외검사기관 성적서/유기농 관련 서류 >>

###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국외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수입 신고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정밀검사 전부 또는 일부 인정**
  - ▶ 국외검사기관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FDA분야별정보 → 식품에서 확인 가능
  - ※ 국외검사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대상 확인

### 유기농 관련 서류

- 대상 : 수입식품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
- 제출서류 : IFOAM 또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복합유기농식품의 경우 발행자의 소속부서, 성명 및 서명이 포함된 원료 성분표 원본
- 유기농인증서 포함내용
  - IFOAM 또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 동 인증기관이 해당 사업장에 인증한 **유기농 식품의 종류 및 회사명, 소재지, 인증 시행일자 (또는 갱신일자)**

### 원재료 함량에 따른 유기농 표시

표시사항	유기농함량	100%	95%이상	70~95%미만	특정원재료	
표시사항	유기농 100%	○	×	×	×	
	유기농공식품	○	○	×	×	
	유기 표시	제품명	○	○	×	×
		주표시면	○	○	×	×
		그 외 표시면	○	○	○	×
	원재료명 표시란	○	○	○	○	
인증기관명, 로고	○	○	×	×		
유기농함량 %	위 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원재료명 표시란 함량기재					

※ 유기농함량 :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 제외)를 기준

※ 2011년 1월부터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농 표시를 하여함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로 문의)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관련 서류 >>

### GMO 표시 신고 식품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 원재료(함량비율 상위 5가지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표시사항	표시제외대상
농산물	· 식약청이 승인한 모든 GM 농산물	· GM농산물과 구분 관리된 농산물로, <b>구분유통 증명서</b> 또는 <b>정부증명서 제출한 경우</b> ※ 3% 이하의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 GM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	· GM농산물과 구분 관리된 농산물로, <b>구분유통 증명서</b> 또는 <b>정부증명서 제출한 경우</b> ※ 3% 이하의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 GM 농산물을 사용하여도, - GM 농산물이 함량비율 상위 5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b>국내외성적서 제출한 경우</b> ※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

▶ LMO(GMO농산물)인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수입승인 후 수입신고 (www.gmo.kfda.go.kr) 참조

### < 국내성적서 및 국외성적서는 다음 내용이 확인 되어야 함 >

- 당해제품 여부 : 검체명(한글, 영문), 제조업소명 및 수입업체 및 주소, 제조일자(lot 번호), 검체량 (kg), 포장상태, 검체성상, 분석개시일 및 종료일자
- 검사방법 : 유전자 추출시험 방법, 유전자 추출 1회당 사용시료량 및 추출시험횟수, 추출DNA량, DNA순도, DNA농도, PCR 시험에 사용한 키트 종류· 프라이머의 대상 유전자· 추출DNA 농도 및 양, PCR 반복시험 횟수, PCR 검출한계 등

위치	제품 주표시면	원재료명 바로 옆
표시내용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 ※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표시방법	용기·포장에 잉크, 각인, 소인 등으로 지워지지 않고 잘 알아볼 수 있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	

※ 현재 식용유, 당류 등 검사가 불가능한 제품까지 표시제 확대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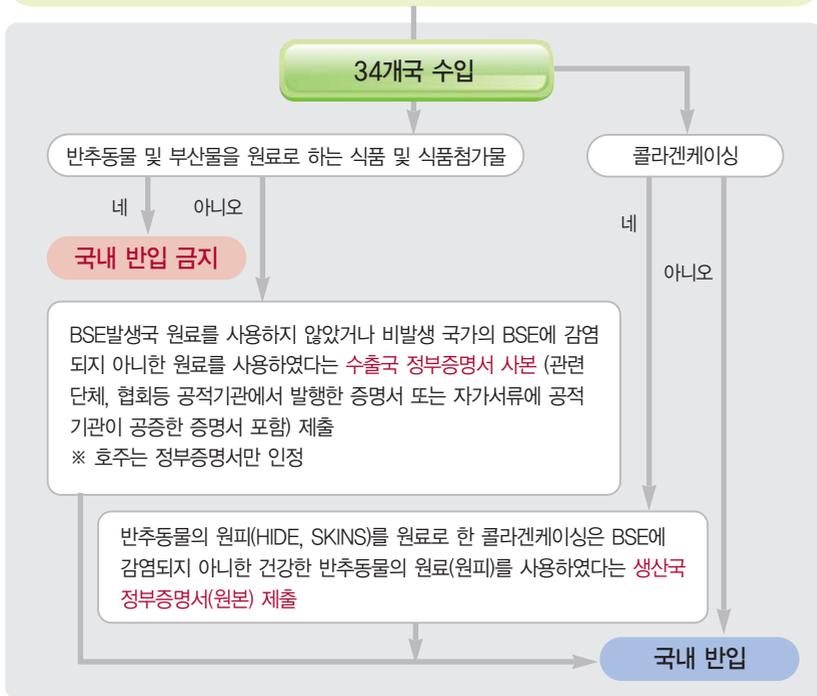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서류 >>

### BSE 대상 제품

-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 케이스닝 제외)

### BSE 발생국 (34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 주문자부착상품(OEM) 관련 서류 >>

### 주문자부착상품(OEM)

-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
- 상표란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  
※ 상표검색 사이트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우측상단 상표
- 제외대상 : 농·임산물 및 주류,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제출서류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유통기한설정실험 자료  
※ 수입식품이 기존 유통기한설정실험을 제출한 수입제품과 다음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유통기한설정실험 생략가능

식품유형(식품종류가 나열 된 경우 식품종류까지 동일),  
성상, 포장재질, 유통 및 보존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당·  
유처리 여부,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 한글 표시사항

-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활자크기 1/2 이상의 한글로 다음중 하나로 표시  
- 원산지 : 국명(위탁생산제품)  
- 국명 산(위탁생산제품)

-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Q&A [www.foodnara.go.kr/importfood](http://www.foodnara.go.kr/importfood) 제공
- ▶ 주문자부착상표(OEM) 관련 문의부서  
OEM 대상여부 및 한글표시사항, 자기품질검사 관련 : 식품안전정책과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및 유통기한설정실험 관련 : 수입식품과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의 위생점검 : 해외실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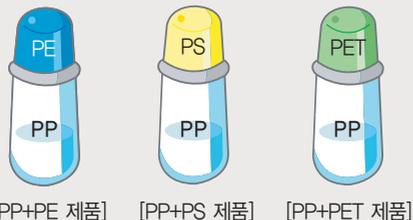




##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신고 >>

### 수입 신고방법

- 동일 재질로 구성된 제품으로 색상, 크기가 다른 것은 일건으로 신고 가능  
(예시) 도자기제 흰접시와, 노랑밥그릇은 일건으로 신고 가능
- 재질 구성이 다른 제품은 일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없음  
(예시) PP+PS+고무제 커피메이커와 PP+PS+PET+고무제 커피메이커는 2건으로 신고  
(예시) 물병 재질이 몸체는 PP, 뚜껑은 각각 PE, PS, PET로 구성된 경우 3건으로 신고



- 여러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날개 판매가 어려운 세트제품은 일건으로 수입신고
- 제조국, 제조업소, 수입자, 재질 동일하나 바탕색상(무늬) 또는 제품명 (모델명)이 다른 기구 · 용기 · 포장이 혼재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제품의 제품명을 1쪽에 기재 하고, 각 바탕색상(무늬) 또는 제품명은 신고서 양식 3쪽의 항란에 기재

### 재질 신고방법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의 재질과 바탕색상 신고
- 식품공전에 등록된 재질로 신고  
식품공전에 등록된 재질명이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정확한 재질 확인 후 첨가물 기준과에 문의하여 식품공전의 재질명으로 확인 받기
- '금속제' 라는 재질명은 사용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금속제명으로 신고  
(예시) 스테인레스제, 철(에폭시수지도장)제
- '야자잎', '바나나잎' 등의 자연산물을 기구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천연재질'로 신고
- 신고하고자 하는 재질이 없는 경우 담당자 선생님께 요청하거나 「식약청 전자민원창구 [<http://minwon.kfda.go.kr>] 성분신청」으로 신청

##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검사 >>

### 동일사동일식품등

- 동일사동일식품등 요건 : 수입자 · 제조국 · 제조업소 ·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 최초 정밀검사 실적에 서류검사 대상 재질(무착색 유리제, 나무제 등)이 추가된 기구등을 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등 인정
- 동일 재질에 여러 개의 바탕색으로 구성된 제품 재수입시 최초 실적과 일부 바탕 색이 변경, 추가 또는 제거된 경우 다른 제품으로 보고 최초 수입품으로 정밀검사 실시

### 검사방법

- 검사방법 : 바탕색상별, 재질별 검사

단, 재질과 바탕색이 다양하게 혼합 구성된 하나의 제품(커피메이커 등)의 경우 동일 재질 범위 내에서 바탕색을 혼합하여 검사

기구명	용도	신고 재질 및 바탕색상	검사 재질 및 바탕색상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업소용 •분쇄한 원두에서 커피 추출	1. ABS(검정) 2. POM(검정) 3. 불소수지(흰색) 4. AS(투명) 5. AS(검정) 6. 실리콘(흰색) 7. 실리콘(검정) 8. PA(검정) 9. PA(아이보리) 10. 금속제(동제) 11. 금속제(그라인드)	1. ABS(검정) 2. POM(검정) 3. 불소수지(흰색) 4. AS(투명, 검정) 5. 실리콘(흰색, 검정) 6. PA(아이보리, 검정) 7. 금속제(동제, 그라인드)

- 동일 재질로 구성된 제품으로 색상, 크기가 다른 것을 일건 수입 후 일부 재질에서 부적합한 경우 신고 된 일건에 대해 모두 부적합 처리
- 부적합 이력 재질에 대한 수입신고 처리방법  
최초 수입 된 제품의 구성 재질이 일부 부적합 후 동일 제품 재수입 시 전체 재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 건강기능식품 신고 >>

### ■ 건강기능식품 종류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록된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제품
- 사전인정 필요없이 수입신고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성 원료로 제조한 제품
- 사전인정 받은 후 수입신고
  - ▶ 사전인정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문의
- 개별 인정 받은 후 매 수입 신고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증서 제출**

### ● 원료성제품과 최종제품

#### 원료성 제품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최종 제품의 제조를 위해 대량포장으로 유통하는 것
- 기능성 내용, 일일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과 같은 소비자 정보 필요 없음
- 원료성 제품에 과당, 전분, 포도당 같은 부원료를 혼합한 반가공 제품도 원료성 제품

#### 최종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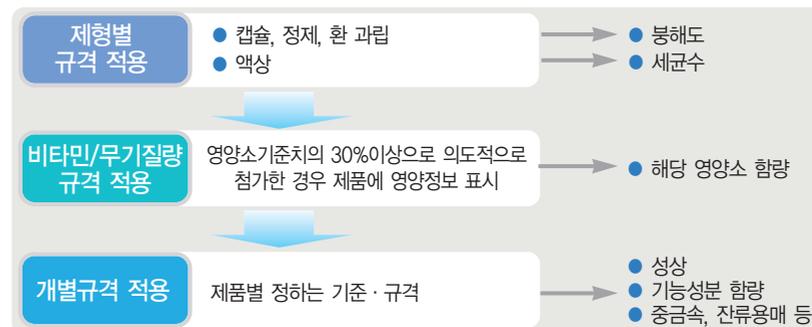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법률에서 정한 12개의 제형 형태(정제, 캡슐, 분말, 액상, 과립,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를 가진 제품**

#### 동일사동일식품등

- 동일사동일식품등 요건 : 제조국 · 제조업소 · 제품명 · 제조방법 · 원료 및 배합 비율이 같은것
- 기능성분의 경우 기능성분등의 규격이 "표시량 이상"이므로 표시된 기능성분의 양이 개정된 규격과 달라지는 경우 실적인정 안됨
- 2010년 이전에 검사받은 기준 · 규격이 개정된 규격보다 강화되거나 신설된 경우 정밀검사대상이며, 이 경우 개정된 규격에 따른 모든 검사항목 실시

## 건강기능식품 검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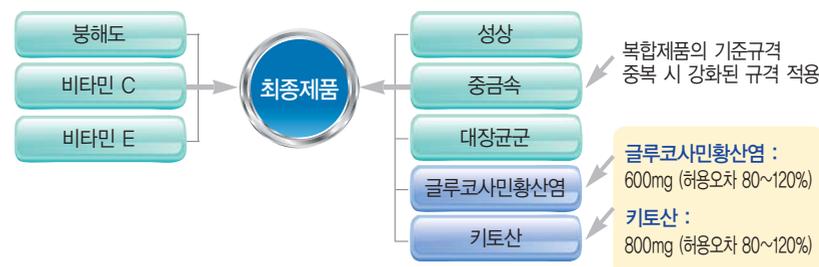
### ● 공통규격 및 개별기준 규격 적용 방법



### ● 글루코사민 황산염+키토산 캡셀제품 검사 방법 예시



### ● 기준규격 적용방법





## 사전확인등록제/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

### 사전확인등록제도

- 방법 :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위생 및 HACCP 기준의 적합 여부를 현지 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수출국 정부에서 확인·제출
- 대상 :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그 단순가공품 제외)
- 수입 신고시 신고증에 사전확인등록 번호 기재
- 혜택 :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면제, 서류검사로 통관

###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 방법 :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를 사전 확인·점검한 사항에 대해 식약청에서 직접 현지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
- 대상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해 수입신고한 식품등
- 혜택 :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식약청 홈페이지 게재, 신속통관

### 사전확인등록제도와 우수수입업체등록제도 비교

구분	사전확인등록제도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점검주체	식약청	수입업체, 식약청
인정범위	등록제품(수입업체와 관련 없음)	등록된 우수수입업체의 제품
신청자	수출국 제조업체	수입업체
점검비용	신청인(수익자 부담원칙)	식약청(식약청 예산)
혜택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등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1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식품위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18조

※ 신청 방법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외실사과 ☎ 02-380-1565 문의

## 식품등수입판매업 거래내역 등록방법 >>

영업자준수사항 중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은 '식약청 거래내역 입력프로그램'에 입력 실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식약청 거래내역 입력프로그램 입력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내 「주요정보 바로가기」 → 이력추적관리사이트 (<http://www.tfood.go.kr>) → 수입식품 판매내역 보고에서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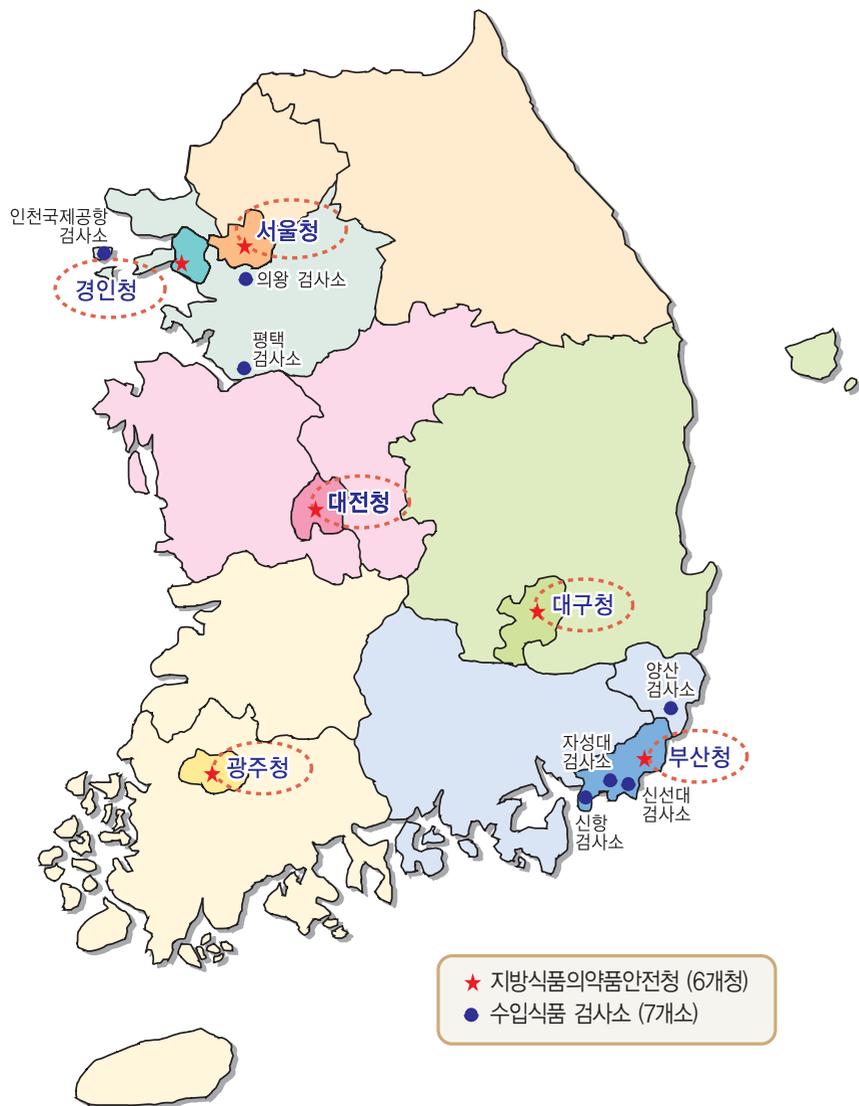


- 거래내역 입력대상 영업자 : 식품등수입판매업자
  - ※ 거래기록은 영업자간 거래에 관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입력 제외
  - ※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원료를 동일 법인의 식품제조공장에서 사용한 것 (자사제조용)도 입력하여야 함
- 거래내역 입력프로그램에 입력시점 : 거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입력내용 : 판매일자, 판매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판매량 등
- 거래내역의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시정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3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 식약청 수입식품처리 관할구역>>



## 식약청 수입식품검사부서 연락처>>

지방청	수입식품검사부서	소재지	연락처	관할구역
서울청	수입관리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래미길 5	02-2640-1432~44	서울시, 강원도 경기(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등두천, 가평군, 연천군)
	수입관리과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9 누리엔 14층	051)602-6201~15	부산시, 울산시, 경남
부산청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부산시 동구 좌천동	051)635-6013, 051)643-5964	자성대부두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	부산시 남구 용당동	051)627-2401, 051)611-7128	신선대부두
	양산수입식품검사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055)372-6011~3	양산
	신항수입식품검사소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051)831-2150~1	신항만, 진해시
경인청	수입관리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217	032)442-4615~8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의왕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의왕시 이동	031)461-9497	경기(안양, 의왕, 성남, 광주, 여주, 이천, 용인, 수원, 안산, 시흥, 군포, 광명, 양평, 하남)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인천시 중구 덕교동	032)740-5800	인천국제공항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031)683-1903~4	경기(평택, 안성, 오산, 화성)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	대구시 달서구 갈산로 72	053)592-7135~6	대구시, 경북
광주청	식품안전관리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5	062)602-1402	광주시, 제주도, 전북, 전남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대전시 서구 선사로 120	042)480-8720	대전시, 충북, 충남

